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2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9.

발 의 자 : 박주민 · 용혜인 · 김 윤
김종민 · 한창민 · 박은정
김준환 · 박용갑 · 김동아
박홍배 · 최민희 · 이광희
임미애 · 남인순 · 이주희
강준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·심의,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의 체계에 관하여는 지난 2026년 6월 2일 제정된 「생명안전기본법」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, 현행법의 규정은 「생명안전기본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,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,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,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호의2, 제9조제1항제3호의2, 제10조제1항제1호,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의2 및 제9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제9조제1항제3호, 제3호의2”를 “제9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 략) <u>4의2. “안전기준”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, 유지 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, 안전기준의 분야,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5. ~ 13. (생 략) 제9조(중앙안전관리위원회)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중앙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~ 3. (생 략) <u>3의2.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</u> 4. ~ 9. (생 략) ② ~ ⑨ (생 략) 제10조(안전정책조정위원회) ①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5. ~ 13. (현행과 같음) 제9조(중앙안전관리위원회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4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안전정책조정위원회) ①

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을
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
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
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
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
둔다.

1. 제9조제1항제3호, 제3호의2,
제6호, 제6호의2 및 제7호의
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

2. ~ 5. (생략)

② ~ ⑦ (생략)

제34조의7(안전기준의 등록 및

심의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
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·
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
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
계를 갖추어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
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
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
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
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
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
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
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

-----.

1. 제9조제1항제3호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 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6조의10(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(이하 “안전지수”라 한다)를 개발·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(이하 “안전진단”

<삭 제>

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·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, 방법, 공표절차 및 안전진단의 실시 방법, 절차,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